

붙임1

소상공인 기준

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

| 업 종* | | 소기업 기준 (평균매출액) | 상시근로자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A 농업, 임업 및 어업 | | 80억원 이하 | 5명 미만 |
| B 광업 | | 80억원 이하 | 10명 미만 |
| C 제조업 | 10 식료품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10명 미만 |
| | 11 음료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12 담배 제조업 | 80억원 이하 | |
| | 13 섬유제품 제조업 | 80억원 이하 | |
| | 14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15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 80억원 이하 | |
| | 17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80억원 이하 | |
| |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80억원 이하 | |
| | 19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80억원 이하 | |
| |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24 1차 금속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27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80억원 이하 | |
| | 28 전기장비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80억원 이하 | |
| | 31 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| 120억원 이하 | |
| | 31 32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| 120억원 이하 | |
| 32 가구 제조업 | 120억원 이하 | | |
| 33 기타 제품 제조업 | 80억원 이하 | | |
|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10억원 이하 | | |
| D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| 120억원 이하 | 5명 미만 |
| E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| 36 수도업 | 120억원 이하 | |
| | 37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 | 30억원 이하 | |
| | 38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| | |
| |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| | |
| F 건설업 | | 80억원 이하 | 10명 미만 |
| G 도매 및 소매업 | | 50억원 이하 | 5명 미만 |
| H 운수 및 창고업 | | 80억원 이하 | 10명 미만 |
| I 숙박 및 음식점업 | | 10억원 이하 | 5명 미만 |
| J 정보통신업 | | 50억원 이하 | |
| K 금융 및 보험업 | | 80억원 이하 | |
| L 부동산업 | | 30억원 이하 | |
| M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| 30억원 이하 | |
| N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 | 30억원 이하 | |
| P 교육 서비스업 | | 10억원 이하 | |
|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| 10억원 이하 | |
| R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| 30억원 이하 | |
| S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| 10억원 이하 | |

*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

붙임2

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

□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

※ '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675호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업공고'의 <별표1>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33409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46102 중 | 담배 증개업 |
| 46107 중 | 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증개업 |
| 46209 중 | 잎담배 도매업 |
| 46333 | 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|
| 46416, 46417 중 | 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|
| 46463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
| 4764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| 47811 중 | 약국, 한약국 |
| 47859 중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 |
| 47993 중 | 다단계 방문판매 |
| 52991 중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|
| 56211 | 일반유희주점업 |
| 56212 | 무도유희주점업 |
| 58122 중 |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|
| 58211, 58212, 58219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| 63999 중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|
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
| 66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
| 68 | 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, 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 부동산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-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|
| 7639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|
| 731 | 수익업 |
| 73904 중 | 감정평가업 |
| 75330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 |
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86 | 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 |
| 91113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| 9122 중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
| 91221 중 |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|
| 91249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| 91291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|
| 9612 중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|
| 96992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| 기타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|

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

사치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

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(가맹본부 및 가맹점 모두)

※ 상표법 제3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명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

휴·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·폐업* 소상공인

*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내용(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)을 준용

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

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

*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 '기업'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.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 등)

【 비영리 기준 】

*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·법인·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

① 비영리 개인사업자

-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,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, 영유아플라자 등

② 비영리 법인 :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

- 상법에서 '비영리 및 단체'로 구분된 정부·지자체·학교법인·의료법인·협회 등은 '상법'상 회사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아님

- '민법'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·학교법인·의료법인·사회복지법인·재단법인·비영리 특별법인(한국은행, 단위농협, 새마을금고 등)

☞ 소비자생활협동조합 :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「민법」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·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,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

☞ 사업조합 :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('98. 12. 28 개정 전의 것)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

☞ 농업협동조합 :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

☞ 새마을금고는 '새마을금고법'에서, 신용협동조합은 '신용협동조합법'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

- 사회복지법인은 '사회복지사업법'에 따라 비영리법인

③ 단체 등 기타

- 교회 등 종교단체는 '민법'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, 교회운동을 위해 일부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